

황강 건태지구·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18. 6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 1 장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황강내 2개지구(건너지구, 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사업 지구의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본 사업은 총 연장 38.0km의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표3]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의 대상범위(하천구역내 하천중심길이 10km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임

< 표 1 >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1.3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황강 건너지구·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및 연장

구분	시점	종점	연장
건너지구	경상남도 합천군 금양리 (No. 28+880)	합천군 용지리 (No. 40+160)	12.0km
죽고지구	경상남도 합천군 미곡리 (No. 0+000)	합천군 문림리 (No. 25+650)	26.0km
합계			38.0km

- 승 인 기 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사 업 기 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협 의 기 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 사 업 기 간 : 착공후 6년

1.4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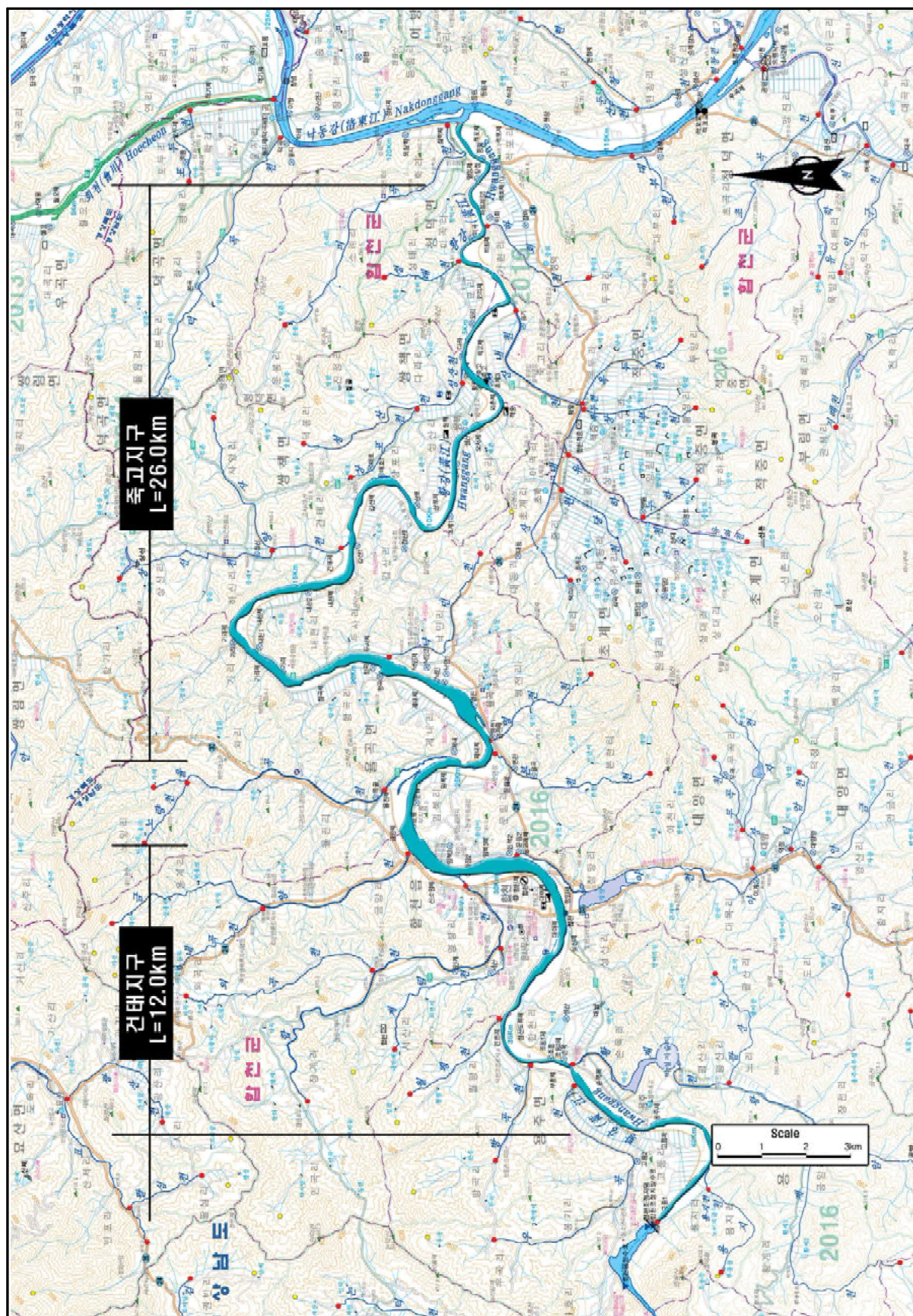
1.4.1 추진 경위

- 2010. 10. : 황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용역 착수
(국가하천 1개소 : L = 83.52km, 지방하천 36개소 : L = 264.05km)
- 2016. 04. : 황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대장작성(국가하천 황강)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2440(2016.4.26.))
- 2016. 05. : 황강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6-234호)
(국가하천 1개소 : L = 83.52km지방하천 36개소 : L = 264.22km)
- 2017. 07. : 황강 건너지구·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7. 12. : 황강 건너지구·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1.4.2 향후 일정

- 2018. 0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2018. 0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및 공람·공고, 주민 등 의견수렴
- 2018. 10. :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 2018. 12.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그림 2) 사업하천 위치도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 주관행정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9인(환경청,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위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임 배 석	-
위 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장	손 수 진	-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주 기 회	-
"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계장	박 창 열	-
"	한국기술개발(주)	환경부 부사장	정 지 현	-
"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 영 주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중 윤	-
"	환경 21연대 경남본부	본부장	김 양 수	-
"	울곡면	이장 협의회 회장	윤 자 목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18. 4. 9 ~ 2018. 6. 15
- 결정사항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2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평가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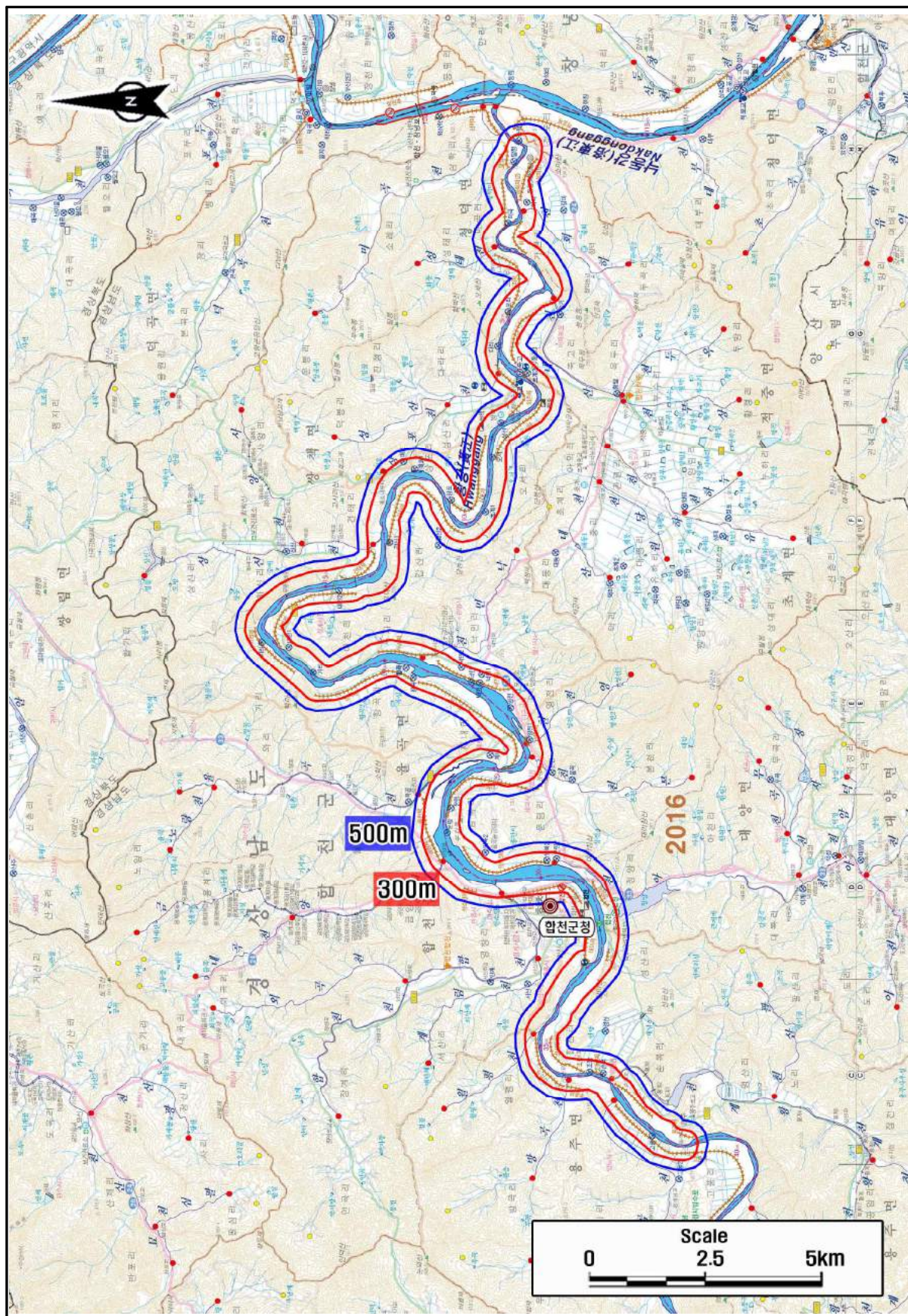
< 표 2 >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비 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하천양안 경계 500m)	•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생훼손, 동물상 서식지 이동, 출현양상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 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하천양안 경계 500m)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 운영시
대기 환경	기 상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 사업하천구간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 공사시
	대 기 질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하천양안 경계 500m)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 먼지, 배기가스 발생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수 환경	수 질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수계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	• 공사시
	수리·수문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수계	• 하천환경정비, 제방공사 등에 따른 수리·수문의 변화 파악	• 공사시 • 운영시
토지 환경	토지이용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사업하천구간내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에 따른 효율적 토지활용 계획 수립	• 공사시 • 운영시
	토 양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 표 2 >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 계속

구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비 고
토지 환경	지형·지질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 흠쌓기 및 흠깎기 발생으로 지형변화 지역	• 공사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업하천구간	• 공사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영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소음·진동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하천양안 경계 500m)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 공사시
	위락·경관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 주변 지역과의 위락·경관영향 발생 지역 -하천환경정비지구 등	• 운영시
사회 · 경제 환경	인구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한 인구 변화	• 운영시
	주거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 인구변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 운영시

(그림 3)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2.2.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17-215호), 2017. 11. 27, 환경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 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영향정도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으로 설정함
- 또한, 본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평가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제외항목으로 설정함

< 표 5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결정사유

분 야	항 목	결정결과			결정사유
		중점	현황	제외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 자연 식생 및 육상 동·식물상의 서식형태변화 • 하천환경정비로 인한 서식처훼손 등의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 • 치수시설 설치로 인한 육수동물상의 이동로 단절
	자연환경자산	-	○	-	• 기존문헌 등을 통한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 자연환경 자산 현황 파악
대기 환경	기상	-	○	-	• 사업하천구간 주변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	-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취	-	-	○	• 사업의 특성상 악취발생은 없음
	온실가스	-	-	○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3.1.1, 환경부)」에 의거 사업특성상 영향없음
수환경	수질	○	-	-	• 공사시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로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수리·수문	○	-	-	• 하천환경정비, 제방공사 등에 따른 수리·수문의 변화 파악
	해양환경	-	-	○	•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

< 표 5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결정사유 - 계속

분 야	항 목	결정결과			결정사유
		중점	현황	제외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하천공간관리 계획 (기본계획과 비교) -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대책
	토양	○	-	-	공사시 장비투입, 공사인부 투입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지형·지질	○	-	-	- 지형·지질 현황조사 및 흙막기·흙쌓기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책 수립 - 토공량에 따른 수급계획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공사시 생활, 지정, 건설, 임목폐기물 발생량 검토
	소음·진동	○	-	-	공사시 공사 장비투입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
	위락	-	○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의 위락시설 현황 파악
	경관	○	-	-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 분석
	위생·공중보건	-	-	○	건강영향평가 대상 외 사업
	전파장해	-	-	○	사업특성상 전파장해의 요소가 되는 시설계획은 없음
사회 · 경제 환경	일조장해	-	-	○	일조피해 시설(고층건물) 설치계획은 없음
	인구	-	○	-	주변지역의 인구 현황 파악
	주거	-	○	-	주변지역의 주거 현황 파악
	산업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미미

나. 평가범위 및 방법

- 본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평가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표 6 >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항 목		평가범위 및 방법		비 고
		범 위	방 법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하천양안 경계 500m)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현황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자 산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자산 현황조사 및 영향 검토	• 공사시 • 운영시
대기환경	기 상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 합천기상대 최근 10년 기상자료 분석 및 영향 검토	-
	대 기 질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하천양안 경계 500m)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토사이동 및 공사차량에 의한 대기영향 예측(모델링 활용) 및 저감 대책 수립	• 공사시
수 환 경	수 질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수계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토사유출, 투입인부에 따른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사시 • 운영시
	수 리·수 문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수계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동 사업관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검토	• 공사시 • 운영시
토지환경	토 지 이 용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검토	• 공사시 • 운영시
	토 양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건설장비 투입,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 공사시
	지 형·지 질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에 따른 영향 및 저감방안 수립 • 토공계획 검토	• 공사시
생활환경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 사업하천구간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 공사시
	소 음·진 동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하천양안 경계 500m)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공사시
	위 락·경 관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검토	• 운영시
사회·경제 환 경	인 구·주 거	• 사업하천구간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인구 및 주거현황 파악	• 운영시

2.2.4 환경현황 조사계획

- 사업하천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
- 동·식물상은 사업하천내를 포함하여 하천양안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조사하고, 동·식물의 출현 및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겠음
- 또한, 기 수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하천구간 내 및 인접구간에서 수행중인 사후 환경영향조사의 환경질 및 동·식물상 조사자료를 활용하며,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조사자료, 물환경정보시스템 측정망 위치를 파악하여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
 - 특히, 사업대상 구간은 현재 「황강 쌍책지구 등 3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운영시)」 조사를 시행 중으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누적된 DATA를 활용할 계획임

< 표 7 > 조사항목 및 지점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항목수	조사횟수
대 기 질	PM-10, PM-2.5, NO ₂ , SO ₂ , CO, O ₃ , Pb, 벤젠	13	8	3
하천수질	유량, 수온, BOD, COD, DO, SS, 총대장균군, T-N, T-P, Chl-a	22	10	3
하천저질	T-N, T-P, 강열감량, COD, 황화물	11	5	3
토 양	Cd, Cu, Pb, As, Hg, Cr ⁺⁶ , Ni, F, 유기인, BTEX, TPH	8	11	3
소음·진동	소음 및 진동	30	2	3

< 표 8 > 문헌자료

과업명	조사시기 (본 사업 적용)		비고
	2017	2018	
황강 쌍책지구 등 3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1~4분기	1~3분기	공사시 조사기간('13.7~'17.9) 운영시 조사기간('17.10~'20.10)

2.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상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가항목 등을 반영하여 작성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표 9 > 주민의견수렴 법적 실시근거

구 분	관련법	내 용
환경 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2.2.6 약식절차 대상사업 해당여부

- 본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의 규모는 총 면적 38.0km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에 의거한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심의 의견 사본]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수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공사2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확인[항강 건너지구·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1198(2018.04.0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서면심의 요청한 『항강 건너지구·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불합과 같이 확인합니다.

불 합 심의의견 1부. 끝

낙동강유역환경청

주무관	김지은	주무관	정하나	환경 평가 과장	2018. 5. 10.	주 기 록
발주처						
사업	환경정비사업-3204 [2018. 5. 10.] 접수 하천공사2과-1198 [2018. 5. 10.]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구 송암대로250번 5, 낙동강유역청 / http://nra.go.kr/hdg					
전화번호	055-211-1652 팩스번호 055-211-1606 / jsun11@nra.go.kr / 비공개(3)					

- 1 -

낙동강유역환경청(1)

낙동강유역환경청(2)

● 사업하천 전제구간은 저수지제대로제에 해당하므로 월동조류(겨울철새: 11월~2월)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

- 사업지역 내 위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업구간 내 저수지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정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함.
- 사업구간 내 상등급 원목습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습지가 분포하고 있으므로 동·식물상 조사시 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가능한 원형보전 또는 생태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기질, 소음·진동

- 공사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지역내 주거밀집지역 분포현황에 따라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평가하여야 함.
- 대기질 현황조사는 2개월이상, 계절별 3일이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경관

- 사업지구의 경관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내 및 사업지구외 근경·중경·원경별로 가시권분석을 통해 충분한 수의 조망점을 선정하여 평가하여야 함.

3. 인식평가결과 대상사업 해당 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 등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과 공정의 개폐요인,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알기 쉬운 초안 요약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를 작성·

- 2 -

미지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5. 기타.

- 금회 사업계획의 하천정비기본계획 반영여부를 제시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계획(기초, 선설 및 중설·제개설 구분)을 반영·표기한 계획 평면도, 종단면도 및 주요측정점 횡단면도를 제시하여야 함. (위성사진 및 계획평면도 중첩도 포함)
- 계획하천 인근의 기 협의 완료한 하천사업의 추진경위 및 협의내용 반영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증설회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018. 05

심의회원 주기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협의회 위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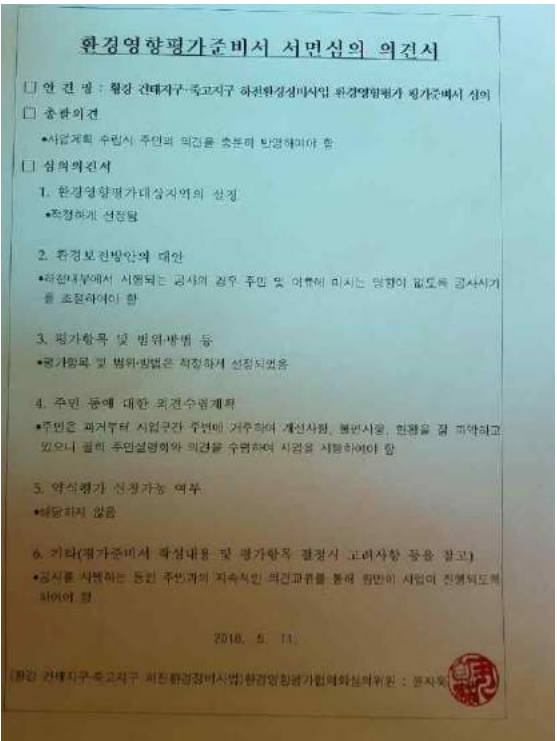
- 3 -

낙동강유역환경청(3)

낙동강유역환경청(4)

「황강 건너지구·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사 업 명</td><td>황강 건너지구·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td></tr> <tr> <td>위 치</td><td>경남 함안군 금양리·송지리, 미곡리·물림리</td></tr> <tr> <td>면 적</td><td>38km</td></tr> </table> 1. 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수리·수문), 발생 폐기물 최소화, 토지이용, 보양, 지형·지질,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무분별한 환경정비 제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2.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오염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함 3. 향후 개발이 수반되는 단위사업의 공사 시 토사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발생, 절·성토로 인한 지형 및 경관변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계획된 저감방안 이행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위와 같이 검토함 2018. 04. . 심의위원 : 함천군 환경위생과 박 창 열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사 업 명	황강 건너지구·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위 치	경남 함안군 금양리·송지리, 미곡리·물림리	면 적	38km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 안 건 명 : 황강 건너지구·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출 갈 의 건 ※ 본 하천환경정비 사업구간은 자연하천 현행이 우수하므로 파도정비, 하천환경 정비, 자정기도로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계획하고, 보·낙차골 및 이도 등은 하천의 종적 연결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해야 함 것임(p5~10) ※ 사업구간 주변에는 우포늪 습지보호지역이 사업하천구간으로부터 약 5km이격되어 있으나, 사업하천 구간내에는 습지습지 등 총 9개소의 많은 습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p27~28), 해당 습지가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심의 의견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본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실질적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하는 바, 평가준비서(p13~15)에 제시된 자연생태환경, 대기·생활환경, 수환경 등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하천양안 경계 500m, 300m, 해당하천 입대 주변수계 등으로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건너지구의 낙차골과 이도 설치 및 죽고지구 보·낙차골 설치 계획(p4~9) 등은 본 하천사업의 특성상 이·저수역 측면 및 수생생물의 종적 연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안 검토를 실시한 후 최적 대안을 선정해야 할 것임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은 하천사업 특성이 고려되어 동식물상, 수질, 수리수문 등 중점항목 10개 및 자연환경자산, 기상 등 원형항목 5개 등이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나(p59~60), ※ 주요 평가항목별 환경현황 조사지점(p62~68)은 하천 현행상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의 발생·유입 및 하상 퇴적구간 등을 면밀히 조사할 후 결정하고, 조사 시기 및 횟수 등은 개발상세 평가항목 주요 특성을 고려하여 3~4회로 검토하기 바람 2018. 05. 11. (황강 건너지구·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위원 : 정 지 현 (인)
사 업 명	황강 건너지구·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위 치	경남 함안군 금양리·송지리, 미곡리·물림리						
면 적	38km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 연건명 : 황강 건너지구·죽고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심의의견서 1. 대상지역 설정 — 대상지역 설정 시 자연 및 우원의 산업단지, 도시개발지 불투수율 발생여부 및 이에 따른 비점오염을 고려할 것 — 하천원의 현행에 따라 대상지역을 설정해야 할 것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전제적인 평가항목 범위는 현행상을 고려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함 — 환경질 측정지점의 사전 탐사하여 그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사범위는 현행에 따라 범위를 단적으로 설정한다. 문헌조사시 주요종의 존재가 확인 된 지역은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조사횟수 및 시기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정해야 함 1) 대기분야 (대기질 및 악취) — 대기질 조사원칙은 11.3.29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준해 실시할 것 — 준설시 준설도에 의한 악취영향 평가 요람 2) 수질: — 수질측정 및 수질분석시 명확한 지점을 사전으로 제시할 것 — 공사시 발생 오수의 처리계획과 운영시 비점오염원 저감계획을 제시할 것 — 퇴적층의 준설도가 토양오염기준에 적합하지 검토할 것 3) 수리수문 : 통수단면 검토 — 홍수예警을 위한 하천의 통수단면 상정된 자료를 제시할 것 — 월간 저류의 유량 검토 및 분류에 미치는 영향 검토할 것(시류파란 정확히 표시) — 자연정기 무수한 비오수에 따른 통수단면이 홍수피해 에 미치는 영향 검토할 것 4) 토양 및 토지이용: — 저지환경정비로에서의 민원 내용 검토할 것 — 퇴적층 준설시 오염정도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농지 또는 임지로의 사용가능성 검토) 5) 지형지질: 자연성이 높은 지역 보전 시에 통수단면 검토에 따른 홍수피해 등에 영향 검토 요람 6) 동식물상 — 생태계 현황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지 조사자를 통하여 조사지점과 횟수를 정하고, 위치의 도면 표시 및 사진을 첨부할 것	— 준설로 인한 생태계 영향 — 어로구조를 계획서 하천 유지용수공급을 검토하여 실제적 어로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 7)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폐기물(암석폐기물 또는 폐유 등)발생 및 처리계획 — 하천의 준설시기 및 방법 — 준설도 발생과 처리계획 8) 경관 — 사전환경성검토법에 따른 경관상의 절차를 이행할 것 3. 주민들의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름 4. 간이영가 신청 가능여부 — 사업 연장길이가 38km로 평가대상 최소규모 이하에 해당함 — 대상 지역내에 환경 및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이 없을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간이영가를 실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5. 기타 — 본 사업의 전체를 파악 할 수 있는 하천장비계획도를 제시할 것. 2018년 5월 4일 심의위원: 김 영 주 (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심의위원장 귀하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영주 교수(1)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영주 교수(2)						

[illegible]

	- 공 란 -
울곡면 이장 협의회 윤자묵 회장	
- 공 란 -	- 공 란 -